

수 신 자 내부결재

(경 유)

제 목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」 개정 계획

재단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」를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.

1. 관련근거

- 가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'23. 4. 11.)
- 나. 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('23. 1. 12.)

2. 주요 개정사항

- 가. 여성폭력 2차 피해 관련 내용 명시 및 구체화
- 나. 성폭력 발생 시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강화
- 다.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인사관리 상의 반영
- 라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서식(별지) 추가

3. 행정사항

- 가. 시행기준: 대표이사 결재완료일로부터 개정 내규 시행
- 나. 향후절차: 대표이사 결재완료 후 개정 사항 차기 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산정

- 붙임 1.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」 개정 계획 1부
2.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」 개정(안) 1부
3. 일상감사 요청서 1부. 끝.

협조자 **한규영**

감
사
관 **노준식**

시행 인재경영팀-1393 (2023.5.11.)

접수

우 03190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(관철동, 삼일빌딩) 6층

/ <http://www.sto.or.kr>

전화 02-3788-8152 전송

/ kyunghee@sto.or.kr

/ 부분공개 (5,7)